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농어촌도로 중 농도는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이 되는 등 농어촌도로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서로 제도적으로 중첩되는 관계임.

이에 군수가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관리·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여 점용 허가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어촌도로 도로구역(유희부지 등) 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 시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

관리자의 의견 청취 의무 신설(안 제11조제8항 신설)

군수는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점용 대상 구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할 때에는 미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.

나. 「재생에너지법」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에 대해 농
어촌도로 점용료를 100분의 50 감면(안 제11조의2제2항 개정)
농어촌도로에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7조의2에 따
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
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자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그 점용 대상 구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1조의2제2항 중 “전기공급시설·전기통신시설·송유관·가스공급시설·열수송시설”을 “전기공급시설·전기통신시설·송유관·가스공급시설·열수송시설·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도로의 점용허가) ① ~ ⑦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1조(도로의 점용허가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<u>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</u> <u>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</u> <u>그 점용 대상 구간의 일부 또는</u> <u>전부가 「농어촌 정비법」에 따</u> <u>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</u> <u>는 경우에는 미리 농업생산기반</u> <u>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</u> <u>다.</u>
제11조의2(점용료의 감면) ① 삭 제 ② 법 제19조의2제4호에서 “국 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”이라 함은 <u>전기공급시설·전기통신</u> <u>시설·송유관·가스공급시설·</u> <u>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</u> <u>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</u> <u>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</u> <u>한다.</u> ③ (생 략)	제11조의2(점용료의 감면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전기공급시설·전기통신시</u> <u>설·송유관·가스공급시설·열</u> <u>수송시설·「재생에너지 개발·</u> <u>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7조의2</u> <u>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 설비</u> ---.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504